

보도시점 2023. 6. 27.(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3. 6. 26.(월)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진단 및 하수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에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덮개 설치하지 않기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 주요 내용.
 3. 도시침수 예방 국민실천 방안
 4.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김희목 (044-201-7021)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내용

- 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0조 제1항·제2항, 안 제41조제2항제7호, 안 별표 3)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 * (영업정지 기간별 과징금) 1개월 1,000만원, 3개월 2,500만원, 6개월 5,000만원
- ②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제9호나목, 안 별표 8)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500만원 이하) 마련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 *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위반횟수별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①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5 신설)
 - 하수관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 배경 및 목적

- 하수관로는 빗물을 하천으로 이송하는 수단으로, 청소·준설 등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배수 불능으로 도시침수 발생
- 지자체에 침수우려지역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관리하도록 하여 도시침수 예방

□ 주요 내용

- (유지관리계획 수립)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관로 현황, 다음 연도 관로 점검 및 청소 계획을 매년 11월 말까지 수립
- 유지관리 실시
 - (점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 대상 연 1회 이상 점검, 장마·태풍 등 기상에 따라 특별 점검
 - (청소 및 준설)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을 장마 전에 완료하고, 태풍 등으로 침수 우려 시 추가 실시
 - 빗물받이 등은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유입구 청소 및 불법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점검, 청소 등 작업실적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에 보고
- (과태료 부과)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 및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함께해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빗물받이란?



- 도시에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 빗물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시에 내린 빗물은 빗물받이로 모인 후 지하 빗물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 담배꽂초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이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꽂초,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뒹개 놓지 않기



쓰레기,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군청에 알리기



침수 예방의 작지만 큰 실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우리 모두 함께해요.

- ☐ (공공하수도관리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 ☐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개인하수도는 제외)
- ☐ (하수관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
- ☐ (빗물받이)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
- ☐ (배수설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
- ☐ (도시침수대응사업)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하여 빗물을 신속히 배제하기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
- ☐ (기술진단) 공공하수도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위해 5년마다 하수처리장 등 하수도 시설에 대해 점검·진단하고 개선방안 수립·시행
- ☐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